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3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최기찬, 강동길, 강석주,
김 경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
김형재, 남창진, 박칠성,
서상열, 서준오, 유만희,
유정인, 유정희, 윤영희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이종태, 임규호, 임춘대,
전병주, 정준호, 한 신,
황철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 지원,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장애인 선수가 대회 출전 시, 장애인 선수의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7조제1호의2 신설).
- 나.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을 규정함(안 제17조제5호의2 신설).
- 다.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 및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(안 제17조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체육진흥법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장애인복지법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호의2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

가. 전국장애인체육대회

나.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

다.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

라.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

5의2.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

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
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
를 제공하여야 한다.